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0도16010 재물손괴  
피 고 인 김○○ (000000-00000000), 부동산임대업  
주거 ○○ ○○ ○○○ 00, 000동 000호(○○○, ○○○○)  
등록기준지 ○○ ○○ ○○○ 000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노4886 판결  
판 결 선 고 2021. 2.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_\_\_\_\_

                          대법관            박○○ \_\_\_\_\_

주    심            대법관            안○○ \_\_\_\_\_

                          대법관            노○○ \_\_\_\_\_